

#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
(2010. 9. 3) 상정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)

### □ 제안이유

-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, 기존의 부천중부·남부 경찰서 명칭이 각각 부천원미경찰서,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국가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과 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중 “부천중·남부 경찰서 각 1명”을 “관할 경찰서 각 1명”으로 함(안 별표 6 및 별표 7).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p>○ 이번 태풍 “곶파스”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자율방재단의 대책은 있었는지?</p> <p>○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</p>	<p>○ 지난 31일 해당 실·국장이 참석한 사전대책회의를 갖고 자율방재단도 각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 유지에 대해 협조를 구한 바 있음.</p> <p>○ 자율방재단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음.</p>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“부천중·남부 경찰서장”을 “시 지역 관할 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# “별지”

[별표 6]

##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
### 1. 조직 및 임무

구 분	조직	담당업무
통제관	관련 재난담당 국·소장	○ 기반재난 상황 업무 총괄, 총괄조정관 보좌
담당관	관련재난담당과장	○ 기반재난 상황 관리 및 , 통제관 보좌
상황실장	재난안전관리과장	○ 상황실 업무총괄
상황 총 괄 반	상황관리팀 (3명)	○ 주간 - 팀장 : 국가기반 보호담당팀장 - 팀원 : 국가기반 보호담당팀원 2명 ○ 야간 및 공휴일 - 팀장 : 재난종합 상황실근무반장 - 팀원 : 재난종합 상황실근무반원 2명  ○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·운영 -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·전파 ○ 지역별,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○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○ 관계기관·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 ○ 일일상황보고서 작성·전파 - 기반대책본부 상황실·관계기관 및 단체 ○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
	상황 분석· 대책팀 (2명)	관련재난담당부서 직원2명  ○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○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-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-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○ 분야별·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-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-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○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○ 대체인력·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○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- 부천시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○ 진행(교섭)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
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(4명)	부천소방서 1명 <u>관할 경찰서 각 1명</u>	○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○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○ 공권력 투입, 질서유지 ○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

## 2. 근무방법

- 가. 상황관리팀은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2교대근무를 나머지 근무자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- 나. 근무 장소는 부천시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.
- 다.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·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3. 상황실 장비 운영·보수

- 가.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상황실 관리 업무담당 직원을 장비관리요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별표 7]

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
1. 조직 및 임무

구 분	조직	담당업무
총괄조정관	총무국장	○ 기반재난 상황 업무 총괄, 차장 보좌
통제관	관련 재난담당 국·소장	○ 총괄조정관 보좌
담당관	관련재난담당과장	○ 기반재난 상황 관리 및 통제관 보좌
상황실장	재난안전관리과장	○ 상황실 업무 총괄
상황 총괄 반	상황관리팀 (3명)	○ 반장 : 국가기반 보호담당팀장 ○ 팀원 : 국가기반 보호담당팀원 2명  ○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- 지역별·분야별,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-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, 긴급 상황 관리 ○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- 즉보 사항,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○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
	상황분석· 대책팀 (2명)	○ 지역대책본부 가동(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 투 입 협조·지원 등) ○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·관리 ○ 경찰·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○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○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·관리 ○ 재난 예·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○ 재난사태 선포·건의,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○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
	보고서작성팀 (1명)	○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
2.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(4명)	부천소방서 1명 <u>관할 경찰서 각 1명</u>	○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○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○ 공권력 투입, 질서유지 ○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
3. 행정지원반 (2명)	총무과, 자치행정과 각 1명	○ 의회보고, 본부장·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○ 경찰력 배치 점검 ○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○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
4. 공보지원반 (2명)	공보실 2명	○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○ 각종 보도자료 작성·배포 ○ TV, 라디오 인터뷰 등

## **2. 근무방법**

가. 모든 상황근무자는 부천시 상황실에서 24시간씩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다.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·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**3. 상황실 장비 운영·보수**

가.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상황실 관리 업무담당 직원을 장비관리 요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